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임대차계약(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”을 “임대차계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용보증) 법 제2조제8호마 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 5.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(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임 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 청하는 경우 6. (생략)	제3조(신용보증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----- -- <u>임대차계약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